

제335회 제1차정례회
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2022. 10. 6(목)

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96
제출일자	2022. 9. 23.
회부일자	2022. 9. 28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우청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-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미래자동차산업육성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
나. 지원사업 범위 규정(안 제6조)

다. 사업 지원대상 규정(안 제7조)

라. 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(안 제6조 ~ 10조)

4. 관계법령

가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

5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가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

나.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
다. 규제심사 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7. 검토의견

□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힘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미래자동차 산업의 정의 및 지원사업의 범위, 산·학·연 협력체계에 포함될 기관에 대해 규정함
- 안 제5조(육성계획 수립)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

위한 도지사의 육성계획 수립 책무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

- 안 제6조(지원사업) 및 안 제7조(사업지원 대상)에서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대상을 규정함
- 안 제8조(산·학·연 협력체계의 구축)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내용을 규정함
- 안 제9조(업무의 위탁) 및 안 제10조(경비의 지원)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*, 환경친화적 자동차** 및 자동차 소재·부품산업 등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자동차 산업의 세계적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< 자율주행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>

- 1> 자율주행자동차 -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☞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2> 환경친화적 자동차 - 전기자동차, 태양광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
☞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- 중앙부처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“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(2030년 국가 로드맵)”을 수립하여 국내 기업의 세계

시장 선점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, 민관 공동의 중장기 전략 추진으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

- 이와 관련, 경상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및 모듈 기반조성, 자동차 튜닝기술 지원 클러스터 조성,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 등(내용 첨부)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미래자동차 산업을 지속 육성할 계획으로 있음
- 타 시·도의 경우 대구·충북이 이미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, 경상북도에서는 「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, 「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기 제정한 바, 본 조례와의 공통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에는 유사중복사항과 행정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①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부품 및 모듈 기반조성

- 사업목적 : 미래자동차 지능화 대응, 관련 인프라 투자 및 핵심 기술 개발 등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반 구축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2년(3년간)
- 총사업비 : 141억원(국비 57, 도비 25, 시비 59)
- 위 치 : 경산시 진량읍 일반3산업단지 內
- 사업주관 :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
- 사업내용 : 자율주행차 인지/판단/제어 등 신뢰성 인증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연계 기업지원 등

②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기반구축

- 사업목적 : 탄소중립 미래차 경량화 이슈 대응 및 차량용 첨단소재 적용 기술 자동차부품 신뢰성 확보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2년(3년간)
- 총사업비 : 289억원(국비 89, 도비 60, 시비 140)
- 위 치 :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內
- 사업주관 : 경북테크노파크
- 사업내용 : 첨단소재 적용 차량부품 성능평가 등 기반구축 및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부품 관련 전·후방 연관 제품 기술지원

③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

- 사업목적 : 신기술을 접목한 튜닝,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자

동차 튜닝부품 안전성 시험평가 및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을 통한 튜닝부품 산업 활성화 기여

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간)
- 총사업비 : 475억원(국비 241, 도비 65, 시비 169)
- 위 치 : 김천시 김천1일반산업단지(3단계) 內
- 사업주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
- 사업내용 : 튜닝카 성능·안전시험센터 및 튜닝 시험·검사장비 구축, 모빌리티 튜닝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

4 미래자동차 사업재편 혁신성장 지원

- 사업목적 : 개별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에 한계로 사업재편 지원을 통해 자동차부품기업 자발적으로 미래차 분야 전환 유도
-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(5년간)
- 총사업비 : 5.5억원(도비 5, 기타 0.5)
- 사업주관 : 경북테크노파크
- 사업내용 : 미래차 분야 지역기업 기술·구조진단, 미래차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재편 추진전략 수립 컨설팅 등

5 미래차 부품 기술융합 지원

- 사업목적 :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 기업-연구기관-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미래차 기술융합지원
- 사업기간 : 2022년 ~ 2026년(5년간)

- 총사업비 : 20억원(도비 15, 기타 5)
- 사업주관 :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
- 사업내용 : 산·학·연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수요기업 공동 부품 개발 지원, 제조 혁신 역량 강화 등

⑥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지원

- 사업목적 :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의 자동차부품 사업화 촉진, 기술 지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
- 사업기간 : 2021년 ~ 2025년(5년간)
- 총사업비 : 20억원(도비)
- 사업주관 : 경북테크노파크
- 사업내용 :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
 -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품개발 제작지원
 - 사업화 직전단계의 유망기술/제품 전산해석지원 및 R&D 기획지원 등